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소: 우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1 4층/전화: 02) 3271-0457 / fax: 02) 718-1781 / 담당자: 오인중

문서번호 : 세가본 제 35호(총무-34)	선			지	
시행일자 : 천일국 6년 천력 12월 16일 (2019. 1. 21)	결			시	
수 신 : 전국 지구장 및 교구·교회장	접	일자		결	
경 유 :	수	번호		재	
참 조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삼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가정연합 본부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실시해 온 목회자 4대보험 정책에 따라 올해 4대보험 취득을 위해 목회자복지기금에 납부된 세금을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및 간편제출 서비스를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국 목회공직자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이란 목회자 및 공직자가 매월 받으시는 급여 중에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 온 소득세와 주민세를 연말에 맞춰 정산하여 과부족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납부하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필히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나. 신고 대상 : 4대 보험에 가입된 목회자 및 공직자

다. 연말정산 산출 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기간)

라. 제출 서류

1) 국세청 전산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상에서 [자료 제공 동의]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공제 내역 확인 및 추가 가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등)

※ 특히, 인적공제사항은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후 간편제출하기 메뉴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클릭만으

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담당자에게 제출되오니, PDF파일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동영상 안내자료: https://file.nts.go.kr/tax/movie/tax_03/01/2018/2/main.html)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1월 23일부터 연말정산 신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협회 인사발령 후 처음으로 연말정산 신고하거나 부양가족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

3) 기타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의 소득공제용 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연금저축, 월세계약서 등)

※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 제출 기한

1) 2019년 1월 29일(화)까지 : 각 교회에서 필요서류 일체를 교구로 제출

2) 2019년 2월 1일(금)까지 : 각 지구/교구에서 협회 총무국으로 제출

바. 행정 사항

1) 문의처 : 총무국 오인중 차장 02)3271-0457

2) 협회로 현금하신 목회자십일조, 가정회비, 협회특별헌금(효정원, 기원절·성화절 특별헌금 등)은 협회에서 일괄 처리하오니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국세청 입력 자료의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문서 : 1.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1부.
2.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 1부. 끝.

회 장 이 기

